

보도 일시	2023. 2. 1.(수) 06:00 2023. 2. 1.(수) 석간	배포 일시	2023. 2. 1.(수)
담당 부서 <총괄>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팀 장 지영철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나상명 (044-202-8893)

## 2.1.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수)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 <1>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차등지원 비율 및 대상>**

지원비율	대상 사업장
70% (자부담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거나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는 사업장</li> <li>* ①전화상담원, ②텔레마케터, ③돌봄서비스 종사원,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건물경비원, ⑦아파트경비원</li> <li>○ 고열·한랭·다습작업, 폭염·한파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이 있는 사업장</li> <li>○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사업장</li> </ul>
50% (자부담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조건 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li> <li>○ 냉난방기, 쇼파(의자), 탁자, 조명 등 개별 비품만 신청한 사업장</li> </ul>

**<2> 공동휴게시설 지원**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3> 휴게시설 지원 품목**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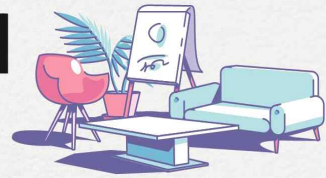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일선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팀 장	지영철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나상명 (044-202-8893)
<공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사업부	책임자	부 장	유재흥 (052-703-0646)
		담당자	차 장	장공화 (052-703-0647)



#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안내



근로자가 업무 중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필요한 물품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문의처 : 052-703-0648 /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 1. 지원대상

- ①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
-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기준” 사업주**
- ※ 건설업은 제외

## 2. 지원금액

- **개별휴게시설**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지원비율	적용사업장
<b>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b>	▷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 7개 취약직종이 종사하는 사업장   ① 전화상담원 ② 텔레마케터 ③ 돌봄서비스 종사원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건물경비원 ⑦ 아파트 경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 보유 사업장
<b>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b>	▷ 그 외,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그 외,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냉난방기, 쇼파(의자), 탁자, 조명만 신청 시 50% 지원

- **공동휴게시설** : 최대 1억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신청 주체별 한도액

- ① 다수 사업주 신청시 : 사업주 당 3천만원 초과지원 불가  
(한도 예시 : 2개 사업장이 설치 시 6천만원, 3개 사업장 설치 시 9천만원, 4개 이상 사업장 신청시 1억원)
- ② 지식산업센터 관리하는 자 신청시 : 최대 1억원

## 3. 지원절차



\* 공단 일선기관 방문신청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가능

※ 서식다운 :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 조성지원

#### 4. 지원대상 품목

• **휴게시설** :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 전용의 공간

- ① **신규설치** 벽체·바닥·천장마감,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 ② **개선** 벽체·바닥·천장마감,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인테리어 공사, 기존 휴게시설 리모델링 포함
- ③ **컨테이너하우스·조립식 휴게실** 부지 내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전용의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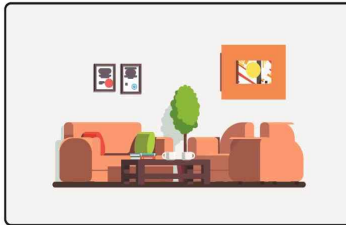
• **휴게시설비품·설비** : 휴게시설 내부의 휴게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설비

- ① **냉·난방기** 휴게시설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18~28℃ 조절기능, 이동식 제외)
- ② **소파·의자** 휴게용 소파·의자(휴게시설 내부에 설치)
- ③ **테이블·탁자** 휴게용 테이블·탁자(휴게시설 내부에 설치)
- ④ **조명시설** 휴게시설 내부 조명 및 조도 조절장치(100~200 Lux 조절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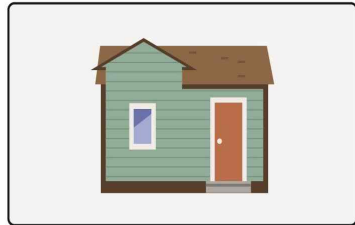
#### 5. 지원품목 예시



휴게시설 신규설치



휴게시설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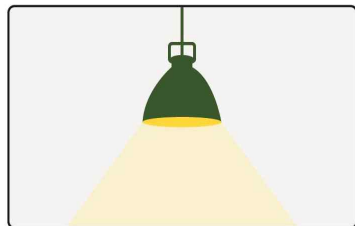
컨테이너하우스·조립식 휴게시설



냉·난방기(일체형)



소파·의자·테이블



조명시설

#### 6. 시행기간

• **재원소진시까지** ※ 접수순으로 진행하되, 신청상황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처

### 공단 일선기관 방문신청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가능

※ 서식다운 :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 조성지원

연번	일선기관명	연락처	주소	관할지역
1	서울광역본부	02-6711-2826	(04512)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7~9층	서울특별시(종로,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2	서울동부지사	02-2086-8026	(05836)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 4층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3	서울남부지사	02-6924-8734	(0725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8층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4	강원지역본부	033-815-1090	(24436)강원도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5	강원동부지사	033-820-2511	(25512)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교동) 정관빌딩 3층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6	부산광역본부	051-520-0614	(46274)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 4~7층	부산광역시
7	울산지역본부	052-226-0546	(44713)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2층, 4층)	울산광역시
8	경남지역본부	055-269-0524	(51430)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홍호동)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9	경남동부지사	055-371-7563	(50635)경상남도 양산시 동면남양산 2길 514층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10	광주광역본부	062-949-8753	(62364)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우산동, 광주무역회관빌딩) 8,9,11층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11	전북지역본부	063-240-8533	(55014)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원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정수군)
12	전북서부지사	063-460-3600	(54001)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13	전남지역본부	061-288-8737	(58566)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14	전남동부지사	061-689-4933	(59640)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15	제주지역본부	064-797-7525	(63217)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특별자치도
16	인천광역본부	032-510-0564	(21417)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인천광역시
17	경기지역본부	031-259-7160	(1622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0층, 13층(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18	경기북부지사	031-828-1963	(11780)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19	경기서부지사	031-481-7572	(1546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고잔동) 2층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20	경기동부지사	031-785-3329	(1355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쇠골로 17번길 3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21	경기중부지사	032-680-6582	(1454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3층 (상동, 대신프라자)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22	고양파주지사	031-540-3822	(10390)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제2전시장 오피스동 805호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23	대구광역본부	053-609-0544	(41936)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 21층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24	대구서부지사	053-650-6856	(42661)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5층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25	경북지역본부	054-478-8034	(39390)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임수동)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26	경북동부지사	054-271-2034	(37822)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27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34	(34122)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28	충북지역본부	043-230-7129	(28393)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가경동) KT 3층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29	충북북부지사	043-849-1033	(27478)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로컬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30	충남지역본부	041-570-3428	(31169)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3층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